

해고 예고 예외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

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재판하는 기관입니다.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하여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.

1. 6 개월 이내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예외 조항의 위헌 결정: 헌법재판소 2015. 12. 23. 선고 2014 헌바 3 결정

【사안의 내용】

A는 B 회사에서 2009. 5.경부터 근무하였는데, 2009. 7.경 예고 없이 해고되었습니다. A는 B 회사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며, “월급근로자로서 6 개월이 되지 못한 자”를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35 조 제 3 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,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.

【판결 요지】

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, “월급근로자로서 6 월이 되지 못한 자”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큰 경우이고,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하므로, 6 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후,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은 근로관계의 성질과 관계없이 “월급근로자로서 6 개월이 되지 못한 자”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, 근무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,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6 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 및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며, 결국 근로기준법 제 35 조 제 3 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.

【시사점】

근로기준법 제 26 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 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, 30 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같은 법 제 35 조는 위 제 26 조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제 3 호에 “월급근로자로서 6 개월이 되지 못한 자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즉, 위 조항에 의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 후 6 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1 달의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셈입니다(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, 다만 해고할 수 있는 경우에 1 달의 예고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).

6 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면제하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하여는,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단지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비판이 있어왔습니다.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6 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,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.

근로기준법 제 35 조 제 3 호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. 따라서 6 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1 달의 예고기간을 두거나, 1 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
2.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: 헌법재판소 2015. 12. 23. 선고 2014 헌마 449, 2013 헌바 68(병합) 결정

【사안의 내용】

A, B 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,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등록법상 불법유출을 원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였습니다. 그러자 A, B 는 헌법재판소에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.

【판결 요지】

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,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·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·신체·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,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,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·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,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 7 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, 다만 위 조항은 2017. 12. 31.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.

【시사점】

주민등록번호는 국민 개개인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.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 식별을 기본으로 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,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악용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어 해당 개개인들은 계속적인 피해의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

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선언한 것입니다.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가 규정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변경절차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이병일 변호사

Partner

byungil.lee@seumlaw.com

T. 02.562.3133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© 2016 SEUM Law.